제2698호
2019. 12. 18.

발 행 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편 집 인 :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
전화 : 3396-4955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◉ 고 시

제2019-152호 :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 ····· 2

◉ 공 고

제2019-928호 :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····· 3
제2019-930호 :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····· 4
제2019-941호 : 세운3-7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•공고 ····· 5
제2019-945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····· 6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http://www.junggu.seoul.kr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◉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◉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

서울특별시중구

고 시
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152호

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

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2월 31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건 명 :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

2. 결정항목

가. 건물신축가격기준액 : 「소득세법」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·고시하는 가액

나. 건축물별 시가표준액

①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
② 적용지수(구조지수, 용도지수, 위치지수)
③ 경과년수별 잔가율
④ 가감산특례
⑤ 증·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
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 특례
⑦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
⑧ 건축물 시가표준액 일람표

다. 차 량

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기준가격표

라. 기계장비

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연도별 잔가율표 ④ 적용요령 ⑤ 산출예시 ⑥ 기준가격표

마. 선 박

① 용어정의 ②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기준가격표 ⑥ 잔가율표

바. 항 공 기

① 용어정의 ② 내용년수 및 잔가율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

사. 시 설 물

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시가표준액 산출방법

아. 부수시설물

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시가표준액 산출방법

자. 회 원 권

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시가표준액 ④ 적용방법

3. 세부결정사항

중구 세무1과 및 세무2과에 비치하고 있는 2020년도 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.

4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공 고
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928호

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61호(2011.12.1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90호(2015.11.19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6-8호(2016.1.27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6-71호(2016.7.20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122호(2017.12.28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 고시된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.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합니다.

2019년 12월 18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)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대
- 면 적 : 변경전 13,763.1㎡(대지 8,635.9㎡, 정비기반시설 5,397.2㎡)
  변경후 13,731.6㎡(대지 8,351.8㎡, 정비기반시설 5,379.8㎡)

다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㈜피티에스지피에프브이 대표이사 유민근
-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06, 8층(논현동, 아이캐슬빌딩)

라.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(2016.1.27.)로부터 60개월

마. 건축계획(변경)

구 분	대지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연면적 (㎡)	층수 (지상/지하)	높이 (m)	주용도	비 고
변경전	8,365.9	58.49	999.96	125,366.75	28층/8층	124.90	업무 시설	
변경후	8,351.8	58.55	999.93	125,372.73		124.38		

바. 공람내용 :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 서류

사. 공람기간 : 2019.12.18. ~ 2020.01.02.(15일간)

아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(☎02-3396-5775)
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930호

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3조,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, 제9조 규정에 따라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을 위하여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18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제공일자 : 2019. 12. 18.

○ 제공받은 자 : ㈜대한감정평가법인 외 3개 법인

※ 중구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법인

○ 제공목적 :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

○ 법적근거 :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7조,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

○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 성명, 주소

○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: 소유자의 의견청취 우편발송 완료시까지

○ 공고기간 : 2019. 12. 18. ~ 2020. 1. 13.

○ 공고방법 : 전국 시·군·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, 구보
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9-941호

세운3-7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•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-119 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60호(2015.07.30.)로 사업시행인가된 세운3-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•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18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공람기간 : 2019. 12. 18. ~ 2020. 1. 2. (15일간)

2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 3396-5753)

3. 공람내용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3-7구역 재개발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

- 위 치 : 서울시 중구 산림동 275-3
- 시행면적 : 2,732.20㎡

다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- 명 칭 : 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 대표 박래영
-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6호(역삼동, 한신인터빌딩24) (☎) 2222-5000

라. 정비사업 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

마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. 7. 30.

바. 주요 사업시행변경 내용

- 변경사유 : 기존 사업시행기간 만료(2020.1.30.한)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변경
- 변경내용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

4. 관계도서 : 세운 3-7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,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9-945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12월 18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폐지이유

▢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제61조, 제62조,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해 예방, 대응, 복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전부개정(2005.1.27.)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▢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를 폐지함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치수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(예관동), 문의전화:3396-6142, FAX:3396-8853, 메일:ehbaek100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붙임: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[붙임]

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